



사이비 사이비 행위 고발단



제1화 회장님을 건드려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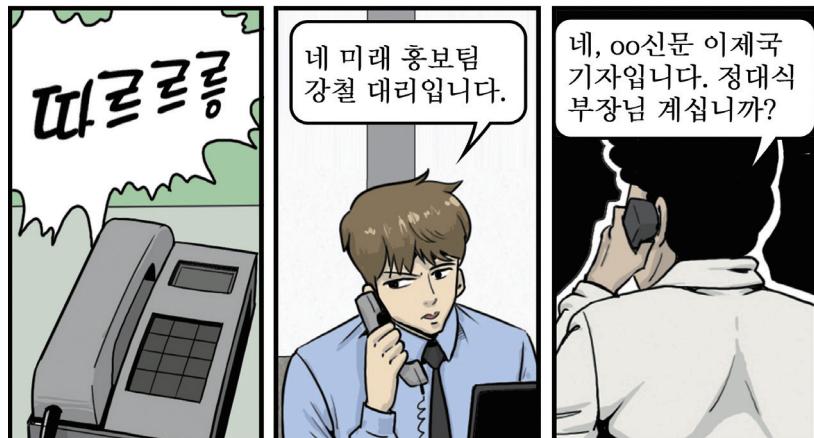
글 K^A + bigfrog 그림





*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: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, 추후보도,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.





※ 기레기 = '기자+쓰레기'의 합성으로 탄생한 신조어







※ 사이버 언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
‘반론보도닷컴’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화에 계속.

반론보도 닷컴
make it right

건강한 언론환경을 위해!



반론보도닷컴은 우리 기업 및 경제에 대한
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해 반론기사를 제작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.

유사언론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‘사이버언론 신고센터’를 이용해 주십시오

www.banronbodo.com T. 02-2055-4000